

어학연구소 운영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어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사업) 연구소는 언어 및 어학교육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응용,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언어교육의 이론과 방법 연구
2. 위 1호의 결과를 토대로 한 언어교재 개발과 연구논문집 발간
3. 해외동포 및 주한 외국인의 어학교육을 돕기 위한 한국어 강좌를 포함한 어학 강좌 운영
4. 지역사회 어학교육을 돕기 위한 어학자료 지원과 언어능력 측정 및 어학교육 훈련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

제 3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소장, 연구부를 둔다.

② 소장은 본교 재직 교수 중 조교수이상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각 부에는 약간명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두며, 소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4조(임무) 연구소의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.

1.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장한다.
2. 연구부는 어학 및 언어교육의 연구, 연구지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3. 교육부는 본교생의 어학실습 강좌, 해외동포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, 지역사회 기관의 언어능력 측정, 기타 어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5조(운영위원회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6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

제 8조(위원회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9조(재정)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국고보조금, 학교보조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제10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199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이 변경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